

왕겨운반차량 소독필증 발급 지침

1. 개 요

목 적

- 고병원성 AI 전파의 주요 매개체로 추정되는 왕겨차량에 대한 소독강화 조치로 선제적 AI 차단방역효과 제고
 - 차단방역 강화일환으로 왕겨공급업체에서 “소독 필증”을 발급토록 지침강화

전국 왕겨공급업체 현황

- 왕겨 : 약 234개소

왕겨공급업체 및 왕겨운반차량 방역 관련 규정

-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에 의거 왕겨를 운반하는 자는 차량과 탑승자에 대하여 소독 실시할 의무를 가짐
-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 3(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)에 의거 축산농가에 왕겨를 공급하는 차량은 축산차량으로 등록해야 함

2. 운영요령

기 간 : '14.10.27~ 상황종료시 까지

대 상 : 전국 왕겨운반차량

이행방법

- RPC(미곡처리장) 운영자는 왕겨차량 출입시 소독을 실시한 후 붙임 1의 “소독필증”란에 업체명 및 소독실시자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

- 업체 소독실시자는 “소독필증” 1부는 업체가 보관하고, 1부는 차량운전자에게 발급하여 소지토록 조치
 - RPC(미곡처리장) 운영자는 왕겨차량 출입시 소독을 실시한 후 붙임 1의 “소독필증”란에 업체명 및 소독실시자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
 - 비발생 시·도는 관련 차량 왕겨운반차량의 “소독실시기록부”에 소독 사항 기록하되, 발생시군(전남) 방문 시 “소독필증 발급토록 조치
- 이행여부 확인조치
- 이동통제 초소 근무자 또는 가축방역관은 해당차량 이동시 왕겨업체에서 발급한 “소독필증”을 확인하고 미 소지 운전자에게는 소독 미실시로 간주하여 시·군에 통보, 시·군에서는 300만원이하 과태료 처분(가축전염병예방법제17조제3항 위반)

[첨부] 소독필증 양식 1부.

[별지 제8호서식]

일련번호 : 소독필증					
운전자	성명		차량번호		
	주소	(연락처 :)			
소독내역	소독일시		이동경로	→	
	소독내용				
소독 실시자	소독지역	<input type="checkbox"/> 발생지, <input type="checkbox"/> 위험지역, <input type="checkbox"/> 경계지역, <input type="checkbox"/> 관리지역, <input type="checkbox"/> ○○ 시·군, <input type="checkbox"/> ○○ 시·도			
	소독장소명				
	소속		직급		성명
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독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. 년 월 일 소독실시 확인자 ○○○ 업체 ○○○ (서명)					

----- **절취선** -----

일련번호 : 소독필증					
운전자	성명		차량번호		
	주소	(연락처 :)			
소독내역	소독일시		이동경로	→	
	소독내용				
소독 실시자	소독지역	<input type="checkbox"/> 발생지, <input type="checkbox"/> 위험지역, <input type="checkbox"/> 경계지역, <input type="checkbox"/> 관리지역, <input type="checkbox"/> ○○ 시·군, <input type="checkbox"/> ○○ 시·도			
	소독장소명				
	소속		직급		성명
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독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. 년 월 일 소독실시 확인자 ○○○ 업체 ○○○ (서명)					